



#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

Multicultural General Welfare Center

수신자 : 수신자참조

경유 :

제목 :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사 양성프로젝트 :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 관한 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는 다문화가정이 직접 꾸려가는 단체로서 상담나눔, 교육나눔, 지원나눔, 봉사나눔의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들이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다문화가정의 강점을 한국사회와 나누는 선두적인 법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본 센터는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사 양성프로젝트 “가정폭력상담원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다문화가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행사개요

- (1) 사업명 :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사 양성프로젝트 :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 (2) 일 시 : 2021년 8월18일 ~ 9월24일(매주 수목금)
- (3) 장 소 : zoom 매체 사용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습에 한해서 대면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4) 대 상 : 30명(저소득, 차상위, 장애인 가정 우선선발)
- (5) 참가비 : 무료
- (6) 후 원 : 행정안전부

## 2. 프로그램

- 1) 진행일 오전10시~오후5시 총100시간
- 2) 교육내용 : 여성학, 이주여성상담, 가정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 등

## 3. 접수기간 및 방법: 2021년 8월 12일까지

- 1)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홈페이지[www.mgwc.or.kr]-[공지사항]-에서 신청서(한글파일) 다운로드 후, 이메일 gwc1719@hanmail.net 제출
- 2) 선정 후 개별연락

4.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동의서 1부, 최종학교졸업증명서

5. 교육대상

(1)수강은 누구나 가능하나 수료증 발급은 전문학교 이상 졸업자들에 한하여 발급

(2)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中 개별기준]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 기준 (여성 가족부 지침으로 이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6. 문의: 김정화 02-717-1718~9 [gwc1719@hanmail.net](mailto:gwc1719@hanmail.net)

붙임 1. 지원신청서

2. 프로그램 일정표 “끝”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이사장 손병호



담당 김정화

사무총장 홍인명

이사장 손병호

협조

시행 발신gwc21-30 (2021.7.20)

접수

/

주소 04308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63길 3, 성화빌딩 4층

Tel. (02)717-1718~9 / Fax. (02)717-1709

이메일 [gwc1719@hanmail.net](mailto:gwc1719@hanmail.net)